

LAW Common Sense Information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도박 빚을 갚아 버렸거나 빚 대신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면 이를 돌려받지 못한다.



글/ 박종복 변호사

Q

도박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다. 도박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못이겨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도박 상대방에게 등기이전하여 주고 말았다. 억울하다.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되는데 아파트를 찾아올 방법이 없는가?

A

도

박은 형법상 범죄행위이고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도박에서 진 빚은 법적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도박 빚을 이미 갚아 버렸다면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취지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 복구를 요구할 때 법이 이에 대하여 협력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따라서 귀하가 도박 빚을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넘겨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법은 이에 대하여 협력하여 주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지는 않고 단지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을 경료하여 주었을 경우에는 그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에서 말하는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종속적인 것에 불과하여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결국 귀하처럼 도박 빚을 갚기 위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미 넘겨버린 경우는 이를 다시 찾아올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